

# 교통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

제정 2002. 7.16 규정 제400호  
개정 2006. 1. 9 규정 제538호  
2016. 7.12 규정 제818호  
2017. 4.26 규정 제894호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교통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관계법령,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교통관리시스템”이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·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·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, 처리, 보관, 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도로전광표지”라 함은 도로상에 설치된 전자식 가변전광판으로 문자, 숫자 및 도형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
3. “유지관리”라 함은 시설물의 정상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.

**제4조(관리범위)** 공단이 관리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는 위탁받은 시설에 한하며 세부적인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획 및 방침에 의한다.(’06.1.9)

**제5조(근무제도)** 교통정보처장은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근무방법,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

## 제2장 운영업무

**제6조(교통정보수집 및 제공)** 시스템 운영자는 교통관리시스템이 설치된 도로의 차량검지기 등에 의해 수집된 각종 교통관련 정보의 수집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도로전광표지, 인터넷,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신속·정확히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.(개정 ’06.1.9, 2016.7.12.)

**제7조(시스템 운영시간)** 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기 보호, 장비수명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기점검,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**제8조(교통정보 제공방법)** ①도로전광표지는 도로정보, 일정구간의 교통소통상황, 교통사고 및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지·정체구간, 주행속도, 소요시간, 기상정보 등 교통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한다.

②관련도로 개설, 공사 예정 정보, 안전 계몽 표어, 기타 홍보사항 등을 표출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문안과 함께 표출한다.

③운영자는 도로전광표지 및 인터넷의 정보표출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7.12.)

**제9조(상황근무)** ①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황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교통상황 감시 및 교통정보제공 (‘06.1.9)

2.교통사고, 공사, 재해 등의 돌발상황 감지 및 유관기관 통보

3.차량검지장치, CCTV 및 이용자제보 등을 통한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

② 상황실 근무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다음 돌발상황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(‘06.1.9)

1.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

2. 기상악화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

3. 교통 지·정체가 상당한 시간 지속될 경우

4.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각종 공사 및 작업을 시행할 경우

5. 기타 교통소통에 위협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

### 제3장 유지관리업무

**제10조(업무범위)** 공단이 수행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

2. 남산권교통정보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

3. 기타 주요 간선도로 등 설치 시설 중 위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(본호신설 2016.7.12.)

**제11조(사업계획의수립)** 교통정보처장은 시설물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하여 시스템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점검업무)** 시설물의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일상점검 : 근무자의 운영상태 일일점검 및 현장 교통정보시스템 점검(‘06.1.9)

2. 정기점검 : 자체 계획에 의거 분기별 1회(년 4회) 시설물 종합점검

3. 특별점검 : 천재지변, 교통사고 및 민원 등 특별한 사항 발생시 점검

**제13조(관계서류 비치)**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문서관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.

**제14조(유지관리 시행방법)** 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일부를 용역계약에 의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15조(일상유지관리)** 시설물 기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예방조치 목적으로 일상 유지관리를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7. 16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규정) 교통정보시스템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2006. 1. 9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7. 1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4.26)(정관 제85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